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인식]

목 차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4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5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8
6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자원조례 폐지조례안	32
7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38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9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57
10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6
11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70
12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6
13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83
14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1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16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17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18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요구안	110
1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9
20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26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제정이유

-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한 번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일목요연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시 편의를 제공하고,
-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여 통합·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입법예고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제7조)
- 나. 공포번호 작성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 제3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개혁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17. ~ 9. 0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산재되어있는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한 번에 알기 쉽게 하여 자치법규 입법 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행정절차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5조(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5.2.20.] [대통령령 제25748호, 2014.11.19., 일부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3.1.22.>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5.\]](#)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5.\]](#)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5.\]](#)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1991.7.1.] [대통령령 제13414호, 1991.7.1., 일부개정]

제11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12조(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4조(운영규정) 법 및 이령에 규정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91.08.12 조례 제12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례 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의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개정이유

- 고령 참전수당 수령자의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하여 전국 최초 명예수당 지급 자치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지원대상사업 삭제(안 제7조)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지원사업과 같은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함.
- 나. 지급기준 개정(안 제10조제2항제1호)
 - 명예수당 : 현행(월 8만원) ⇒ 개정(월 10만원)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 173백만원(2016년도 본예산 확보 계획)
- 다. 합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15. ~ 10. 0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지원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7조를 삭제하고,
고령 참전수당 수령자의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현행 월 8만원의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3.11.14.] [법률 제12104호, 2013.8.1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11.8.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장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법률의 위임 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함(안 13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8조·제11조·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삭제함(안 제13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15. ~ 10.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제13조(사용료 반환)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11조(사용허가),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등)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9.19.] [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 2. (생략)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5. (생략) [전문개정 2007.10.17.]

<탁아소, 유아원 ⇒ 어린이집 으로 바뀐 연혁>

□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1.14.] [법률 제4328호, 1991.1.14., 제정]

부칙 <제4328호, 199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 이하 생략~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 이하 생략~

□ 등록규제 개선 과제

연번	조 례	개선이 필요한 사항	유 형	관련부서
5	거창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부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주민생활 지원실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의 우선 대상을 확대함(안 제1조·제2조)
 -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나.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삭제함(안 제8조제2항)
- 다.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 변경함(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삭제함(안 제8조제2항)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15. ~ 10. 0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관리함에 있어서 우선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의거 추가 또는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의 우선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안 제1조·제2조)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삭제함(안 제8조제2항)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불합리한 지방규제 일괄정비 (기획감사실-9944호(2015.7.22.))

관련 조례	현행 및 문제점	개선 내용	유형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관련 조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허가)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 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1.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	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취소 시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2. 위임범위 일탈

관련 조례	현행 및 문제점	개선 내용	유형
	활동 제한	하는 규정 삭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법률 제12668호, 2014.5.21.,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 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

특·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3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69호, 2014.11.24., 일부개정]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5.9.12.]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
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
체를 말한다.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5.9.12.]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
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
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노인복지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2.3.] [법률 제13196호, 2015.2.3., 일부개정]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폐지이유

- 「기초연금법」(‘14.5.20.제정)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 정비 사업으로 권고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8.13.)」 관련 지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비용의 분담 등)

-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담 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1. ~ 10.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중앙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병행하여 통보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거창군 관내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 30,000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폐지하는 것으로

○ 폐지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6.30., 제정]

제23조(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급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군·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광역시·도에게 지급하고, 특별시·광역시·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 특별치·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군·구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의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한 노인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 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급 대상자는 거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 ① 장수 수당은 만 85세부터 3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당은 신청 익월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지급 한다.

제5조(신청)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이 곤란할 경우 부양가족 또는 이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대상자가 거창군 관할 구역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정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
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사회보험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사업군으로 분류한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8.13.)」 관련 지침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1. ~ 10.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중앙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병행하여 통보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일반노인 중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노인에게 월 50,000원 이하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 폐지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지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8.13)호의 이첩입니다.

2.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15.8.11)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지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지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장·군수, 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정책과장은 동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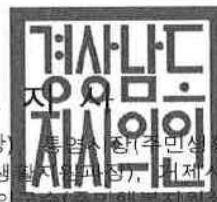
○ 시·군 및 실과 자료 제출 일정

- 정비 추진단 구성 현황 제출 : 15.8.21(금)까지
- 정비계획안 제출 (신규사업 포함) : 15. 9.18(금) 까지
- 의회 제출 기준 정비추진실적 제출 (신규사업 포함) : 15.11.20(금)까지
- 의회 통과 기준 정비추진실적 제출 (신규사업 포함) : 16. 1. 8(금)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지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1부.
3. 시·군별 정비 추진단 구성현황 직성 양식 1부.
4. 정비 대상 사업 목록 및 정비계획(실적) 작성 양식 1부.
5.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작성 양식 1부
6. 권역별 설명회 일정(안) 1부 끝.

경 상 남 도



수신자 창원시장(사회복지과장), 진주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통영시장(주민생활복지과장), 사천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시장(시민복지과장), 밀양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시장(주민생활과장), 양산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의령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함안군수(주민생활복지실장), 창녕군수(주민복지지원실장), 고성군수(주민생활과장), 남해군수(주민복지실장), 하동군수(주민복지과장), 산청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함양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거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합천군수(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송혜경 사회복지담당 오문택 복지노인정책 전결 2015. 8. 19.
과장 하태봉

협조자

시행 복지노인정책과-20081 (2015. 8. 19.) 접수 주민생활지원실-51073 (2015. 8. 20.)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복지노인정책과 / <http://gsnd.net>

전화번호 055-211-4813 팩스번호 055-211-4919 / hksong69@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2015. 8.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사 무 국

<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 >

정비기준	사업수	예산 (억원)	유사중복 사업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 체	1,496	9,997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63	219	· 국민건강보험	·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지원 · 저소득계층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74	393	· 기초연금	· 장수수당 등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191	768	· 교육급여(교육부)	· 저소득층 교육지원 · 보호아동 중고등학생 참고서지원 등
			· 주거급여(국토부)	· 사랑의 집짓기사업 · 희망의집 임대주택 등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1,068	8,617	·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돌봄사업	· 노인 목욕서비스 · 경로위생수당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이주여성 한글교실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 긴급복지	·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폐지이유

- 정부사업으로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 조손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이는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 정비 사업으로 권고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거창군 조손수당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8.13.)」 관련지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여성가족부고시 제2015-35호, 위임행정규칙)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3. ~ 10.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중앙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병행하여 통보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조손가정에 월 50,000원의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 폐지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5.9.12.]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학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국립 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립·사립 고등학교: 교육감

2.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여성가족부장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임행정규칙

□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시행 2015.7.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5-35호, 2015.7.1, 일부개정]

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전액
자립촉진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2010년에 가입한 자산형성계좌지원 대상자(국기초 수급자 : 가구당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가구당 월 20만원 이하)는 2015년까지 지원

2. 적용기간 : 2015.7.1일부터 2015. 12. 31일까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

‘수급자’ ‘최저생계비’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최저생계비의 100%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최저생계비의 13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최저생계비의 150%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2) 연령 기준

- 만 5세 이하 아동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12세 미만 아동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급 가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수급자 이행급여 중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지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8.13)호의 이첩입니다.

2.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15.8.11)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지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지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장·군수, 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정책과장은 동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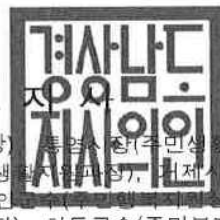
○ 시·군 및 실과 자료 제출 일정

- 정비 추진단 구성 현황 제출 : 15.8.21(금)까지
- 정비계획안 제출 (신규사업 포함) : 15. 9.18(금) 까지
- 의회 제출 기준 정비추진실적 제출 (신규사업 포함) : 15.11.20(금)까지
- 의회 통과 기준 정비추진실적 제출 (신규사업 포함) : 16. 1. 8(금)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지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1부.
3. 시·군별 정비 추진단 구성현황 직성 양식 1부.
4. 정비 대상 사업 목록 및 정비계획(실적) 작성 양식 1부.
5.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작성 양식 1부
6. 권역별 설명회 일정(안) 1부 끝.

경 상 남 도



수신자 창원시장(사회복지과장), 진주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통영시장(주민생활복지과장), 사천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시장(시민복지과장), 밀양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시장(주민생활과장), 양산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의령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함안군수(주민생활복지실장), 창녕군수(주민복지지원실장), 고성군수(주민생활과장), 남해군수(주민복지실장), 하동군수(주민복지과장), 산청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함양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거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합천군수(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송혜경

사회복지담당

오문택

복지노인정책 전결 2015. 8. 19.

과장

하태봉

협조자

시행 복지노인정책과-20081 (2015. 8. 19.) 접수 주민생활지원실-51073 (2015. 8. 20.)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복지노인정책과 / <http://gsnd.net>

전화번호 055-211-4813 팩스번호 055-211-4919 / hksong69@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2015. 8.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사 무 국

<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 >

정비기준	사업수	예산 (억원)	유사중복 사업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 체	1,496	9,997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63	219	· 국민건강보험	·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지원 · 저소득계층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74	393	· 기초연금	· 장수수당 등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191	768	· 교육급여(교육부)	· 저소득층 교육지원 · 보호아동 중고등학생 참고서지원 등
			· 주거급여(국토부)	· 사랑의 집짓기사업 · 희망의집 임대주택 등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1,068	8,617	·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돌봄사업	· 노인 목욕서비스 · 경로위생수당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이주여성 한글교실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 긴급복지	·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제정) 2010.12.29 조례 제20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세대의 구성원인 손자녀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그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1계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가정 아동양육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 세대별 공적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세대
나. 제2계층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
2.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대 단위의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명절위로금”이란 조손가정에 대하여 설·추석명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대 단위의 지원금을 말한다.
4. “학습지원”이란 조손가정 손자녀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학습을 돕는 사람의 파견, 방과 후 학습의 연계,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인적·물적서비스를 말한다.
5. “성장지원”이란 조손가정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인적·물적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조손가정으로서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한 세대로 한다. 다만, 손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② 조부모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부모가 65세 미만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1. 조부모가 일정한 소득없이 3개월 이상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2. 조부모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군수가 확인한 경우

제4조(지원내용) ① 제2조제1호의 구분에 따른 조손가정의 계층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계층 : 조손가정수당, 명절위로금, 학습지원, 성장지원
2. 제2계층 : 학습지원, 성장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가출·실직 또는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구분) ① 군수는 조손가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에 대하여도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명절위로금
2. 비예산사업 : 학습지원, 성장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준은 예산 사정과 다른 제도에 따른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 등을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에 지원내용을 알리게 하고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으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조손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른 비예산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에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실시) ① 조손가정수당은 세대당 월 5만원으로 하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명절위로금은 세대당 20만원으로 하며, 설·추석명절 전에 지급한다.

③ 조손가정수당 및 명절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으로 현금 지원이 추가될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학습지원 및 성장지원 등 인적·물적서비스의 지원은 사실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되, 인적서비스는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를 반영하여 지원하고, 물적서비스는 지원사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⑤ 조손가정수당과 명절위로금은 지원대상자 개인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보고 및 점검) ① 조손가정업무 부서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손가정업무 부서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변동사항을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조손가정으로 지원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세대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연령 초과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5.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5.1.20)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5조제1항)
 -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제출
- 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변경)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 신설 : 조례로 위임된 민간위원 자격 및 심의회 소집 및 정족수 등
- 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조항 신설(안 제30조제5항)
 - 감경률 100분의 30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공유재산법」 제10조·제16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2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완화(안 제30조제5항)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8. 18. ~ 9. 0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전 40일로 구체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관련 상위법 및 법령의 조항을
표기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5.1.20.]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

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08호, 2015.7.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특허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17호, 2015. 1. 1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하 생략 ~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제7조의2 신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민간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

~ 이하 생략 ~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 「관광진흥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27호, 2015.2.3., 일부개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

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8.4.] [대통령령 제26479호, 2015.8.4., 일부개정]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6.]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여 지역 문화 창달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지역문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 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지원 대상사업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의 개최
 - 지역문화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 지역 문화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 지원제외 :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 또는 영리단체, 일회성 행사 또는 사업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법」 제10조·제16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2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완화(안 제30조제5항)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8. 18. ~ 9. 0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토록 하였고 제6조에는 지원대상 사업과 제외사업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사)한국예총 거창지부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총”을 구체적 명시 ○ 제2조(정의)의 3호 신설 요청 -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거창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7조(지원범위) 신설 요청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운영비는 조례가 아닌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음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2016년도 운영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음. ○ 또한 지원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개정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미반영



관련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09호, 2014.7.28., 제정]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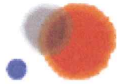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 문화체육관광부 해석공문(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2799호(2015.8.20.))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 가능 근거 규정 통보

1. 관련문서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4056호('14.9.1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3264호('14.10.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708호('15.2.12)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296호('15.6.9)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우리 부는 지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사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가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자체에 통보('14.10.1)한 바 있습니다.

-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②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개정 '14.5.28, 시행 '15.1.1)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 기준 (안행부 / '14. 09. 16) :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 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입법 추진(법령에 운영비 지원 근거 명시)하되, 우선 소관 부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3. 또한 우리부는 지자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동 규정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폐지이유

- 예술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소홀 및 운영 부진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을 잃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유형 5)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 (경상남도 법무담당관-1885호(2015.3.10.)관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5. 11. ~ 5. 3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2006년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가조면 기리 구 석강초등학교에 스튜디오를 설치 관리·운영하였으나 관리소홀 및 운영부진으로 그 효력을 잃어 폐지하는 것으로

○ 폐지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경남도 법무담당관-1885호(2015.3.10.)관련

유형	1	2	3	4	5
내용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시효가 끝난 조례)

□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6.01.04 조례 제17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창작스튜디오는 거창군 가조면 기리 535-1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4. 기타 편의시설

제4조(사용) 창작스튜디오는 거창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필요시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사업)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 및 계약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창작스튜디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스튜디오 기본 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 ⑥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창작스튜디오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창작스튜디오의 운용실태가 부진할 경우
5. 거창군교육청과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제정이유

-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보존관리 및 제외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20백만원(2016년 본예산 확보 계획)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25. ~ 10. 1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거창군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 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사항으로 문화유적 보호관리의 책임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기록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 마. 생략

~ 이하 생략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경상남도지정문화재(이하 “도 지정문화재”라 한다)란 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1.25, 2003.04.24, 2009.05.14>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11.08.18>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개정 2003.04.24>

-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03.04.24>
- 나. 경승지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03.04.24>
-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지형·지질·광물·동굴·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03.04.24> <개정 2011.08.18>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그 밖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1993.11.25, 2009.5.14, 2011.8.18, 2014.10.10>
- ② 이 조례에서 “문화재자료”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5.14>
- ③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3.04.24> <개정 2009.05.14>
- ④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신설 2011.08.18>
- ⑤ 이 조례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제정이유

-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12. 2. 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작은도서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도서관, 법인·단체 및 개인이 설립하여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안 제3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 문화활동 지원 및 지역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안 제5조)

- 지원기준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 지원범위 : 도서 및 자료구입,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구입,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지원

라. 작은도서관 운영기준(안 제6조 ~ 제14조)

- 공간과 위치, 운영인력,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시간, 휴관일, 안전 등
- 작은도서관별로 지역주민이 1/2이상 포함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제5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 42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25. ~ 9.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12. 2. 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사항으로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6호, 2012.2.17., 제정]

◇ 제정이유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 온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 아.(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41호, 2012.8.13., 제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3. (생략)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나. ~ 바. (생략)
5. ~ 11. (생략)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받

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9.3.25.>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5.5.6.> [시행일:2015.7.1.] 제1호나목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생략)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 1) 공립 공공도서관 (생략)
- 2) 사립공공도서관 (생략)
-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별표 2] <개정 2012.8.13.>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보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3조, 별표)
 - 위반행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추진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07. ~ 9.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2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보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3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고(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4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6.22.] [법률 제8725호, 2007.12.21, 제정]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며,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외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채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채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채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채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3.5.10.] [대통령령 제24532호, 2013.5.10., 일부개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8조(징수 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14.7.30.] [안전행정부훈령 제48호, 2014.7.30., 일부개정]

[별표 9]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03 과태료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 이하생략~		

□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2015.07.31 조례 제1026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제2조 <삭 제 2015. 7. 31.>

제3조 <삭 제 2015. 7. 31.>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7. 31.)

제5조 <삭 제 2015. 7. 31.>

제6조 <삭 제 2015. 7. 31.>

제7조 <삭 제 2015. 7. 31.>

제8조 <삭 제 2015. 7. 31.>

제9조 <삭 제 2015. 7. 31.>

제10조 <삭 제 2015. 7. 31.>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질서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기간을 질서법(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20조 제1항)과는 다르게 정한 경우(예컨대 30일)에는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상의 기간(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2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나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과태료부과 근거법령에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이 적용되어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감경하거나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60 과태료의 납부기한

질의요지

■ 과태료의 납부기한

회 신

- 질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개별법률(예컨대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60일로 정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도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질서법 제20조는 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법률상 반드시 이의제기기간(60일) 이내이거나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60일로 일치시키는 경우 이의제기 전에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가산금이 발생함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 또한 국세징수법 제11조(국세 납부기한 30일) 또는 국고금관리법령(납부기한 15일)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을 반드시 이와 일치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제8조)

-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등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2조·제7조)

- 자 또는 단체 ⇒ 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6조, 8조, 10조

나. 예산조치 : 1,010백만원(2016년도 예산확보 계획)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1. ~ 10. 1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제8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690호, 2014.5.28., 일부개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5.3.27.>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5.29.] [대통령령 제26286호, 2015.5.28., 일부개정]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2015.6.28.] [법률 제13251호, 2015.3.27., 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사용료 기준을 마련함.
- 사회·경제·문화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사용료
경감 대상에 반영하여 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일부 조정함(안 제6조)
 - 볼링장과 탁구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나. 100분의 50 사용료 경감 대상 추가함(안 제15조)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다. 볼링장 사용료 기준 신설함(안 별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11. ~ 2015. 10. 0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제15조제4항)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 시간 조정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취약 계층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사용료 경감 대상에 반영하여 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8호, 2015.2.3., 일부개정]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개정이유

-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건전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변경하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청소년수련활동·문화활동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 나.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변경(안 별표 2)
- 다. 사용료 감면을 변경(안 별표 3) ※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함
- 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삭제(안 제13조제3항)
 - 사고발생 시 사용자에게 대한 민·형사상 책임 전가규정 삭제
- 마.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 및 띄어쓰기
 - 전염병 ⇒ 감염병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4장, 제6장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 삭제(안 제13조제3항)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8. 4. ~ 8. 2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별표3)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활동과 문화활동사업 보조금의 지원 근거와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와 사용료 감면을 변경을 통해 청소년활동 시설의 건전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82호, 2015.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나이·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 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5.5.4.]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19.] [법률 제12444호, 2014.3.18., 일부개정]

◇개정이유[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전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개정이유

- 「민법」이 개정('13.7.01.시행)되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함.

3. 주요골자

- 가. 개정된 「민법」에 맞게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용어 변경함(안 제2조제2항)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함.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제22조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27조
 - 지득한 ⇒ 알게 된, 인 ⇒ 명, 기타 ⇒ 그 밖의, 당해 ⇒ 해당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자 ⇒ 사람,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 추가함(안 제9조제1항단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9조·제12조,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8. 4. ~ 8.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제9조제1항단서)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민법」이 개정('13.7.01.시행)되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5.5.4.]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5.4.] [대통령령 제26223호, 2015.5.1., 일부개정]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법」

[시행 2015.7.1.] [법률 제13124호, 2015.2.3., 타법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요구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요구이유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운영실태

- 가. 시 설 명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내 1층
- 다. 규 모 : 면적 132m²
- 라.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마. 위탁대상 사무
 - 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 운영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결혼이민자 여성 취업지원, 한국어

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바. 재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년

○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 결정(재 위탁법인 : 거창기독교청년회 거창YMCA)

사. 선정방법 :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자. 예산지원

○ 시설운영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시행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재 위탁) 운영의 필요성

○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결혼이민자 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다문화가족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14년 여성가족부 및 (주)한국리서치 조사결과 이용자 및 프로그램 만족도, 다문화 행복지수 도내 최우수)되고 있어, 이후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을 갱신, 재위탁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향후계획

- 2015. 10월 중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여부 통보
- 2015. 12월 중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계약
- 2015. 12월 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결과 보고(경남도)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라.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위탁대상 및 절차 등)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2조(준용)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기독교청년회에 위탁운영 되고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을 갱신, 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위탁대상 및 절차 등),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2조(준용),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등에 따라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 위탁(위탁기간갱신) 운영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을 갱신 재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조기정착을 꾀하고,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2조(준용)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 센터 현황

위탁기간	위탁법인	센터장	면적	위치	직원수 (아이돌봄지도사)	비고
‘13.1.1~’15.12.31 (아이돌봄:’14.4.1~’16.3.31)	거창가톨릭 청년회	조미금	132m ²	거창읍 아름로 66	4명 (46명)	

○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세 대	인 원	자 녀 수	비 고
326	1,049	364	

자녀수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기타
364	154	54	45	39	7	21	35	3	6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사업/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실시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 운영평가

- 2014년 여성가족부 및 (주)한국리서치 조사결과('13년 실적)
⇒ 이용자 및 프로그램 만족도, 다문화 행복지수 도내 최우수

○ 예산액 : 494,468천원(국비210,187 · 도비52,366 · 군비231,915)

□ 위탁사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위탁기간(재위탁 - 위탁기간 갱신) :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15. 9. 25)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위원회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6명
- 위 원 장 : 위촉직 위원중 호선
- 위 원 : 6명
 - 관계 공무원 : 2명(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장)
 - 다문화가족지원관련 전문가 : 3명
 -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 1명(경남도립 거창대학)

- 다문화교육관련 전문가 : 1명(거창군 교육지원청)
- 다문화관련 단체 :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공개모집) : 1명
- 선정위원 임명 및 위촉 : 군수
 - 신청자와 특수관계(이사, 감사, 대표와 관련)에 있는 자는 제척
 - ※ 위촉위원은 심사당일 특수 관계 부존재 확인각서 제출 의무화
- 운영기간 : 위촉 시부터 수탁법인 선정 시까지 비상설기구로 운영
 - 수탁법인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 심의의결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현 수탁법인 업무 성과 평가 : 위탁기간 갱신(3년 이내)여부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2015. 10월 중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여부 통보
- 2015. 12월 중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
- 2015. 12월 하순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결과 보고(경남도)



관련법령 발췌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79호, 2013.8.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362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12.12.,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362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16.>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16.]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362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사업계획서

2. 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시행일 : 2014.05.28)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사유지 매입

1) 제안이유

- 환경부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의 부지 조성으로 실증화사업후 토지는 거창군에 무상귀속되며 인공습지 공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편의시설 도모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사업대상지내 사유지 매입

2)취득재산의 표시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3,899	30,044			
취득	토지	가조면 수월리 680	답	307	3,469	2016	조류감시및 제거활용 기술개발 실증화사업	이형기
		가조면 수월리 679	하천	268	3,028			이경준
		가조면 수월리 678-1	구거	453	897			이경준

	가조면 수월리 182-3	구거	817	1,617		이복금
	가조면 수월리 182-2	답	301	3,642		김희주
	가조면 수월리 182-4	구거	56	111		이현량
	가조면 수월리 181-2	구거	169	335		이복전
	가조면 수월리 182-1	답	701	8,482		이현량
	가조면 수월리 181-1	답	516	6,243		이현량
	가조면 수월리 180-2	전	311	2,220		오명무

3) 취득재산의 위치 : 가조면 수월리 680 외 9필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검토의견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환경부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의 부지조성으로 실증화사업후 토지는 거창군에 무상 귀속되며 인공습지 공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편의시설 도로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사업대상지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2. 요구이유

- 월성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운영실태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 위 치 :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 개 원 일 : 2001. 5. 20
- 사 업 비 : 4,964백만원(국비 1,680, 도비 860, 군비 2,424)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시설규모
 - 부 지 : 96,912㎡(29,315평, 대지 46,426㎡, 임야50,486㎡)
 - 건 평 : 건축면적 1,544.04㎡, 연면적 3,945.03㎡(지하1층, 지상3층)

구분	면적(m²)	주요시설	비고
계	3,420.85	지하 1층, 지상3층	본관
지하	871.86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1층	1,143.54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2층	1218.7	강당, 강의실, 숙소(8실)	
3층	186.75	지도자숙소(5실)	

나. 그간 운영사항 등

- 2000. 12. 28 ~ 2003. 12. 27 : 민간 위탁
- 2003. 12. 28 ~ 2006. 12. 31 : 1차 계약 갱신
- 2007. 1. 1 ~ 2009. 12. 31 : 2차 계약 갱신
- 2010. 1. 1 ~ 2012. 12. 31 : 3차 계약 갱신
- 2013. 1. 1 ~ 2015. 12. 31 : 4차 계약 갱신

다.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무인원(상시)	이용인원 (2014년기준)	수입 및 지출현황(천원)		
		수입(A)	지출(B)	증감(A-B)
계 : 4명 - 원 장 :1명 - 사무국장 :1명 - 팀 장 :1명 - 영 양 사 :1명	계 : 8,879명 - 초등학교 : 878명 - 중고등학교 : 7,380명 - 대학교 : 0명 - 일반 : 621명	357,866 (수련 및 프로그램 지원비, 기타수입)	357,866 -인건비: 95,837 -시설보수: 19,568 -공공운영비: 50,147 -차입금상환: 64,394 -운영비: 127,920	0

라. 위탁사무 및 조건

-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월성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마. 위탁기간 : 2016. 1. 1 ~ 2019.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 선정방법 : (사)홍사단의 위탁계약갱신 신청서 접수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예산지원

- 월성청소년수련원 시설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결정 사항 지원.

4. 참고사항

가. 향후계획

- 군의회 동의 및 위탁기간(규칙)변경 : 10월
- 수탁기관 신청서접수 : 10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선정 :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12월 하순

나. 위탁계약갱신 계획 :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기간이 2015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수련시설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운영)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 (위탁운영)

-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 할 수 있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

- 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59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